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4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외 10명)
- 나. 제출일자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나.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 또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라.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각 호)
- 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 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 라.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동물학대자로 하여금 동물의 치료비를 징구할 수 있게 하는 안 등,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

-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유기동물응급치료센터는 중증의 유기동물에 대한 응급치료 및 유기동물 보호의 사각지대 시간(야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중증 유기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설립 한 바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의 근거를 광의로 해석¹⁾하여 민간경상보조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1)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

동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유기동물 입양의 지원

- 개정안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유기동물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며 입양을 추진하고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대립하고 있음.
-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공간적인 한계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보호받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개별 동물의 복지가 침해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임.
-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유기동물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 동물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안락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반면 유기동물을 영원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물의 생명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장되고 있음.

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20일이 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임. 다만, 안락사에 있어서 인도적인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두 측면에서의 주장 모두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유기동물의 발생은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입양한 뒤 유기함으로서 나타난 것으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의 성숙을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일부 존재한다 할 것임.
-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책임을 증대시키고, 1회에 한하여 동물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시키고자 제안된 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하는 것인 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물의 유기 또는 유실 시 (해당 동물을 찾을 수 있어) 소유주의 의무가 강화될 것임.
- 동물보험료 지원의 경우 입양시 1회 1년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S화재보험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음. 유기동물 입양시 1두당 평균 20만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으며, 가입동물은 개(犬)로 한정하나 연령이나 질병력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동물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이는 반려동물이 개인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삶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인 바, 비반려인에 대한 상대적인 형평성이 고려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관련 현황

- 2018년 기준 전국의 유기동물은 12만1천2백마리가 발생하였음. 이중 주인에게 인도되는 비율은 13.1%이며, 분양이 29.5%, 안락사가 21.9% 및 자연사가 25.5%로 나타나고 있음.
- 동물의 유기사유 중 하나인 과도한 병원비 지출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가 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유기동물의 분양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 안락사 비율(26.8%)이 높게 나타나며 실제 유기되는 빈도 역시 고양이(28,115마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91,963마리)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동물 처리 현황(2018년, 전국)

축종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보호중
개	91,963	15,315	27,384	1,531	15,570	24,627	32	827	6,677
		16.7%	29.8%	1.7%	16.9%	26.8%	0.0%	0.9%	7.3%
고양이	28,115	505	7,649	797	15,151	1,858	872	410	873
		1.8%	27.2%	2.8%	53.9%	6.6%	3.1%	1.5%	3.1%
기타	1,191	99	777	14	179	69	7	15	31
		8.3%	65.2%	1.2%	15.0%	5.8%	0.6%	1.3%	2.6%
계	121,269	15,919	35,810	2,342	30,900	26,554	911	1,252	7,581
		13.1%	29.5%	1.9%	25.5%	21.9%	0.8%	1.0%	6.3%

- 서울시의 경우 유기(실)동물의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분양율은 최저 27.4%에서 최고 32.8%를 나타내고 있음. 2012년을 기준으로 인도/반환비율은 상승한 바, 이 경우 동물등록제도의 제도적 성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동물 처리 현황(2018년, 서울시)

연도	계	구조 실적			조치 내역				
		개	고양이	기타	인도/반환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2018	8,220 (100%)	5,368 (65.3%)	2,607 (31.7%)	245 (3.0%)	2,098	2,566	1,411	1,996	149 (방사19포함)
					25.5%	31.2%	17.2%	24.3%	1.8%
2017	8,630 (100%)	5,584 (64.7%)	2,758 (32.0%)	288 (3.3%)	2,114	2,606	1,512	2,228	170 (방사18포함)
					24.5%	30.2%	17.5%	25.8%	2.0%
2016	8,645 (100%)	5,872 (67.9%)	2,433 (28.1%)	340 (4.0%)	2,295	2,533	1,442	2,331	44 (방사15포함)
					26.5%	29.3%	16.7%	26.9%	0.6%
2015	8,902 (100%)	6,060 (68.1%)	2,541 (28.5%)	301 (3.4%)	2,256	2,517	1,277	2,832	20 (방사1 포함)
					25.4%	28.3%	14.3%	31.8%	0.2%
2014	9,551 (100%)	6,644 (69.6%)	2,616 (27.4%)	291 (3.0%)	2,217	2,757	1,370	3,207	-
2013	11,395	7,765	3,269	361	2,121	3,136	1,961	4,177	-

	(100%)	(68.1%)	(28.7%)	(3.2%)	18.6%	27.5%	17.2%	36.7%	
2012	13,556 (100%)	7,860 (58.0%)	5,350 (39.5%)	346 (2.5%)	1,863	4,442	3,370	3,666	215(방사)
					13.7%	32.8%	24.9%	27.0%	1.6%
2011	15,229 (100%)	8,523 (56.0%)	6,263 (41.1%)	443 (2.9%)	1,830	4,179	3,672	5,473	75(방사)
					12.0%	27.4%	24.1%	36.0%	0.5%
2010	18,624 (100%)	11,120 (59.7%)	7,092 (38.1%)	412 (2.2%)	1,973	5,449	10,873	329	-
					10.6%	29.3%	58.4%	1.7%	

- 개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막고,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되었고, 이에 현황자료를 참고해 볼 때,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4 종합의견

-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동물유기 및 유실의 방지 그리고 동물응급치료센터의 설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살펴본 바 개정안이 담은 내용적인 측면과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